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행 분야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부문에 대한 재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8명, 8급 11명) 및 공항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1. 00. 공포, 2. 0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

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장(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30명”을 “29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29”를 “1,034”로 하고, 일반직 계 “1,019”를 “1,0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90”을 “99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536”을 “2,554”로 하고, 일반직 계 “2,536”을 “2,5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27”을 “2,545”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국토교통부 소

속기관 공무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관련)

총계	2,565
일반직 계	2,565
고위공무원단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2,556
전문경력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② (생략)	제2조(소속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u>	<u><삭 제></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제9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u>	<u><삭 제></u>
제46조(직무) <u>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u>	<u><삭 제></u>
제47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u>	<u><삭 제></u>
② <u>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u>	
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	<u><삭 제></u>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 검토

제4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삭 제>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

 ----- 29명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29</u>	<u>1,034</u>	+5
·	·	·	
·	·	·	
일반직 계	<u>1,019</u>	<u>1,024</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90</u>	<u>995</u>	+5
·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36</u>	<u>2,554</u>	+18
일반직 계	<u>2,536</u>	<u>2,554</u>	+18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27</u>	<u>2,545</u>	+18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